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현황과 과제

이신규*

요 약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구현을 위하여 OECD, APEC, UNCITRAL, IEC, ITU, UN, UNCTAD 등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제기구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이슈들을 분석하고 향후 논의과제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서론

정보통신의 발달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가 형성되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전자메일(Electronic Mail)이나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유저그룹(User Group) 등과 같은 이용자 상호간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활동의 장으로서 사이버 마켓(cyber market)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과 함께 암호화,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내, 조직간의 서로 다른

영역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공급자들을 직접 연결하여 제품의 생산·마케팅·선적·판매·사후관리 등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성장해감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기업간(Business-to-Business)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to-Customer)의 상거래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는 개별 소비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에 새로운 사업성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구조 및 사회·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설정을 통하여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초보단계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 보안, 지불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전자상거래는 세계화,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

* 청운대학교 국제무역정보학과 조교수

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 확보 등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여 주로 통상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향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제논의 방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시대에 따른 상거래방식의 변화

2.1 전자상거래의 규모

전자상거래의 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인터

넷의 이용자는 매년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에 의하면 현재 전자상거래규모가 매년 20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000억달러에서 최대 8,000억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수도 1997년 약9천5백만명에서 매년 평균 23.6%의 증가를 보여 2002년에는 약 2억7천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이와 같은 증가추세에 따라 1998년 약 3억 5,4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96억 1,300만 달러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1999). 다른 예측에 의하면 기업간 인터넷 거래는 1996-97년 기간중 매 6개월마다 2배씩 성장하였으며, 1998년 기간 중에는 3-4개월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2002년에는 4,34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 이외에 EDI 및 PC통신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2001년 전체 수입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기술 관련 자료 전문가인 IDC의 예측에 의하면 2003년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5억 명에 이르고 거래규모도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윤창인, 2000). 이로써 개방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업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장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 델 컴퓨터, 보잉 등은 보수부품 주문과 고객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운영한 결과 이익이 빠르게 창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3~5년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에 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2. 전자상거래시대의 상거래방식의 변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세계경제의 새

로운 질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소에 의하면 2003년에는 세계 비즈니스의 80%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정보기술을 응용한 사이버 금융이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인터넷기업'으로 재편되고 있고 기업내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여 비즈니스의 모델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 새로운 형태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비즈니스환경에서 변화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결제시대의 등장으로 인한 대금결제관행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상거래에서 이용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방식,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우편송금환(M/T)·송금수표(D/D) 등과 같은 송금(Remittance)방식, 어음인서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 D/P) 등과 같은 추심(Collection)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결제시스템방식으로 대금결제체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²⁾

둘째, 해외시장 정보와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접근방법의 변화이다. 무역관련 유관기관 등을 통한 조사, 상공인명부를 이용한 조사, 국내외 무역관련 기관, 해외출장, 무역박람회 등과 같은 기존의 해외시장정보 조사방법과는 달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마케팅이 가능하다.

셋째, 무역계약체결의 형식과 방법의 변화이다. 기존의 상거래에서는 우편(post), 텔렉스(telex), 전보(telegram), 팩시밀리(facsimile)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다. 또한 계약체결의 형식으로는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된 전자거래약정(E-Agreement)과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을 이용하게 되었다.

넷째, 상품인도관행의 변화이다. 상품운송은 국제간의 상품운송을 통하여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유형재를 중심으로 해상운송 및 육상운송, 그리고 항로를 이용한 항공운송을 활용하였다.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한 거래에서도 상품의 운송은 종래의 운송과정을 통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되지만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어와 같은 지적재산권 형태의 무형재는 사이버공간상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III.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국제 기구의 논의동향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통상이슈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7월 미국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1) 전자상거래의 초기형태는 정보조달의 전자화(CALS)에서 비롯되었다.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수행되는 형태는 ① 특정기업 간 혹은 기업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폐쇄형 전자문서교환(close EDI)에 의한 거래, ② 불특정 다수의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자문서교환(open EDI)에 의한 거래, ③ 'CALS거래', ④ 기업과 소비자사이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거래' 등이 있고, 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usiness to Business ; BtoB, B2B)',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usiness to Consumer ; BtoC, B2C)',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Business to Government ; BtoG, B2G)' 및 '동종간 내부간 전자상거래(Peer to Peer ; PtoP, 2P)' 등이 있다.

2)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credit card), 전자화폐(electronic cash), 무역카드시스템(tradecard system),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방식, 스위프트에 의한 전자신용장(SWIFT L/C)방식이 있다.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추가적인 내국세 도입금지, 민간주도 및 정부규제의 최소화 등의 기본적인 원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 및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강인수 외 7인, 1999). EU는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주도, 비합리적인 규제철폐 등의 기본원칙에는 미국과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내국세, 개인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용면에서 앞서고 있는 선진국들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OECD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의 국제 논의기구이다. 이 외에도 WT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전자공학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이 있으며, 지역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유럽연합(EU) 등이 있다.

3.1. WTO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논의의 무대인 WTO는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논의하고 있다.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3월에는 동 내용이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됨으로써 WTO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5월에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회원국간의 회의를 거친 후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에서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계획 자체와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이슈를 일반이사회 상시의제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디지털제품, 즉 게임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혹은 음악 등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자전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2. OECD

OECD는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산하의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조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암호화, 인증, 정보통신기반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성봉·김유찬, 1998). OECD는 현재까지 3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³⁾을 채택하였다. 특히 재정위원회(CFA), 정보통신컴퓨터위원회(ICCP), 소비자정책위원회(CP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 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국제적 논의의제를 상정하고 있다.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및 내국세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거래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직면하는 위험과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 조세행정에서의 전자상거래기술 활용, 미국의 무관세지역화 제안 검토, 과세지표 결정기준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조세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별을 배

3) 이들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생활가이드라인(1980),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선언(1985),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1992),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1997)이 있다.

제하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창출되는 소득의 성격규명, 비트세 도입반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이종화·이성봉, 1997).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1994년부터 국제소포배달비용의 저감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 신용카드 Chargeback과 원격판매의 원칙 수립 등 소비자 시장의 세계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 왔다. 1997년부터 동 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상반기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결성하여 우리 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민간단체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률적 제도의 환경조성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투르크 회의에 이어 1998년 10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잠재력 실현(A Borderless World :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구축, 디지털시장에 대한 기본규범의 확립,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극대화 등이 논의되었다. 오타와 각료급 전자상거래회의에서 범세계적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 소비자의 계약철회권과 재판관할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문제, 상대국 인증의 상호인정에 관한 각료선언과 국제거래의 조세체

계의 확립에 대한 보고서가 승인되었다.⁴⁾ 199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오타와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Towards Convergence of Stakeholder Interest)'이라는 주제의 파리포럼이 개최되어 오타와 각료회의 주제에 대한 추진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OECD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규범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율적 규제 및 법제화 등에 대한 국가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3.3. APEC

APEC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발표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 원칙'이 발표된 이후이다. 전기통신그룹은 APEC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작업그룹으로 이 작업반의 가동은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4)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향후 행동계획(Action Plan), 민간기구 및 국제기구의 행동계획도 검토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추가 논의사항도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문서는 다음과 같다. ① 암호기술규제목록: 회원국의 암호기술 수출입 통제, 사용규제 등에 관한 법과 제도정리, ② 경제적 영향: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③ 정보기반의 역할: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촉진, 시장진입, 상호연계성, 인터넷 체중해소, 가격결정, 시스템장애 극복, ④ 개인정보보호 선언 배경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설명, ⑤ 소비자보호 보고서: 소비자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설명, ⑥ 인증제도 목록: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정책 및 활동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⑦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시장과 관련된 시장추세 분석, 시장개발의 변수, 장애해소를 다룬 보고서, ⑧ Y2K문제: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점, 경제적 파급효과, 각국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과제 제시, ⑨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이 갖는 장단점 분석, 정보기술활용방법 및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회의에서 APEC정상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8년 회의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8년 2월 말레이시아의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호주의 제안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구성된 후 19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각료선언과 실행조치 기본원칙이 채택되었다. 1998년 11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APEC정상회담에서 작업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① 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에 관한 이슈로 보안, 사생활 보호, 인증, 전자서명, 암호화, 지적재산권 제고방안, ②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에 관한 이슈로 표준, 정보통신 인프라 협의, ③ 규제와 관련된 이슈로 조세, 관세, 내용물, 무역규범 논의, ④ 물류와 관련된 이슈로 배달제도 및 지불제도 논의 등이다(한국전산원, 1999).

3.4. UNCITRAL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법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전자계약의 이행을 규율할 계약의 기본규정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서류의 유효성 조건을 정의하고 법적, 상업적 목적의 전자서명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또한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중 EDI 및 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규율하고, EDI,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발생하는 전자문서도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현재 UNCITRAL은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작업과제로서 공개키 암호와 방법에 대한 기술적 대안 문제, 전자계약 문제, 인터넷상의 재판권 문제, 적용법 문제 및 분쟁해결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IV. WTO 전자상거래 관련 과제

WTO는 OECD와 더불어 사실상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통일규범의 제정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WTO가 주로 다루는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이다. 특히 미국은 WTO회원국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가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9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전자상거래가 WTO차원에서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WTO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무역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간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상품교역이사회는 전자적 전송을 GATS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지적재산권이사회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와 함께 관련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9년 7월까지 국

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여 1999년 11월 제3차 각료회의시에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후에 계속될 전망이다.

4.1.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WTO협정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전자상거래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일종의 복합물(hybrid)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의 분류방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규범이 GATT협정이나 서비스무역협정(GATS협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제규범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ATT와 GATS협정 모두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GATT협정은 GATS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ATT협정과 GATS협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에 대한 적용범위가 다르다. GATT에서 내국민대우는 모든 상품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GATS에서의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이 양허하기로 약속한 분야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GATS에서는 정부가 시장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량적 제한이 허용되지만 GATT는 일부 예외⁵⁾를 제외하고는 수량적 제한이 금지된다. 셋째, 조세체계에 있어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이

양허표상의 내국민대우와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ATS는 관세 혹은 과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나, GATT는 관세율이 영세율이 아닌 한 과세의 부과를 상정한다. 넷째, GATT에는 정부조달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GATS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를 어느 규범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회원국의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분류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998년 9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TO, 1998). 이와 관련된 활동 중에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인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GATT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자문서비스나 회계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GATS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가 CD와 같이 기록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과거에는 GATT규범을 적용하였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기록매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디지털콘텐츠를 상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EU 등은 서비스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제3의 영역으로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 모든 수량조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스크린 쿼터,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세이프가드발동 등과 같이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된다.

4.2. 서비스무역협정(GATS협정) 문제

기존의 서비스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GATS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체가 서비스무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GATS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는 GATS의 기술중립성원칙(technological neutrality)으로 이것이 서비스의 전자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비스무역이 사회로부터 일반이사회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서는 기술중립성원칙과 관련하여 ① GATS는 그 제공수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GATS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고, ② GATS에는 서비스의 제공수단을 구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GATS협정은 기술중립적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WTO, S/L74 27 July, 1999).

WTO 서비스협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의 공급형태는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이다. 이러한 공급형태는 서비스가 국가별로 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GATS의 범위를 정의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S하의 개방약속 일정에 대한 기초로 활용된다. GATS의 공급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1990년대 초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였다. 즉 1형태인 국경간 공급과 2형태인 해외소비가 3형태인 상업적 주재와 4형태인 자연인의 주재에

비하여 해당되는 부문이 거의 없었다. 우루과이 협상 당시 시장규제와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1형태는 원거리통신과 방송, 2형태는 관광여행과 같은 분야별 사례의 열거로 충분하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기존의 공급방식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1형태와 2형태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개념이 불명확해졌다. 1형태와 2형태간의 구별이 어렵고, 전자상거래를 어느 공급형태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기준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발전하여 왔으나 GATS상의 규제가 향후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규제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인 프라이버시, 공중윤리와 문화정책, 미성년자 보호, 문서인증, 지불체제의 안정성, 암호화, 도메인명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WTO 영역밖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민간부문이 WTO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다루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맞춘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양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GATS협정 제6조(국내규제), 제8조와 9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와 통신부속서와 제14조(일반적 예외)가 관련된다. 전자상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① 서비스부문에 대해 현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심화시킬지, ② 전자상거래의 특정 쟁점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규제내용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GATS협정은 국내 규제가 “서비스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의제로 부각되는 문제는 ①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정책의 목표설정 여부, ②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와 통신전송에 적용되는 규제의 장단점 및 합리성 검토 등이다.

둘째,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의 핵심은 통신망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통신서비스가 아직 독점화되어 있는 국가의 공급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독점적 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되는 여타 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3.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미국이 무관세화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통상이슈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무관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미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제품의 국제교역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인수 외, 1999).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EU는 1997년 12월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상품 및 용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수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요인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EU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잠정적인 무관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범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럴 경우 자국의 조세수입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관세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통상문제는 무관세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온라인 상품(on-line products)과 오프라인 상품(off-line products)영역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조사, 협상, 주문,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단계를 통하여 주문한 상품의 배송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고, 오프라인 상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항공이나 해운수단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상품의 인도까지 인터넷에서 완료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의 디지털제품과 여행정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전자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산업자원부, 1999). 하지만 인터넷에 의하여 주문되지만 제품의 인도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상거래가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서비스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를 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경우 CD, 음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디지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전통적인 전자적 수단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상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또한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기술중립성원칙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제품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수단으로 인도되는 경우 상품으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 서비스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동일상품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문제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지적재산권분야이며 이중에서도 저작권과 상표권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이며, 전통적 의미의 도서는 물론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필름, 악보, 컴퓨터프로그램, 광고문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저작권문제는 거래 대상인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복제, 불법유통 등으로 인하여 저작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조치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디지털재화의 분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표권 등록, 기업명이나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자사의 도메인명으로 등록하는 행위, 상표권이나 상표를 온라인에서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위, 비방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도메인명과 상표권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야기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도 예상된다.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품질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친숙한 상표권에서 신뢰성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탐색엔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명이 법인체의 신원확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상표권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중재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도메인명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도 1999년에 '인터넷주소무단점유방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명도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상표(trade mark)영역에서도 도메인명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합당한 도메인명을 먼저 등록한 개인이나 기업은 현재 협의나 법정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으로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문제도 협상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V. 전자상거래 과제에 대한 대안

WTO 제3차 각료회의가 무산되었으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① 1998년 5월 제2

차 각료회의 선언에서 합의된 무관세관행의 지속, ②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도입의 억제, ③ 새로운 규범의 제정없이 WTO 기존 규범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④ WTO 규범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합의되는지에 대한 작업의 지속문제에 합의하였다. 2000년 7월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작업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속하고, 전자상거래 작업에 참여하였던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및 지적재산권이사회와 무역개발위원회가 공동이슈들을 검토하여 동년 12월 일반이사회 정기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개발, 기술적 지원의 유형, 개도국의 혁신적인 해결 및 성공사례, 개도국의 관세징수에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사회는 개관관할권, 준거법, 전자계약, 실행, 지적재산품의 분류를 공통의 이슈로 제시하였고, 서비스이사회는 관세, 전자전송 제품의 분류, 경쟁이슈를 공통이슈로 제시하였다.⁶⁾ 지금까지 각 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전자전송물의 분류문제와 이에 대한 관세부과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2000년 7월에 개시된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불필요한 내용이 무역장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하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을 다룰 특별작업반의 구성에 동의하였다.

5.1.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연장문제

WTO 제3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회원국들간에 디지털정보에 대한 무관세관행의 연장문제에 이견이 있었지만 연장문제 자체에는 동의하였다. 상품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의 제거가 WTO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도 기본적으로 장벽이 없어야 하며, 추가적인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무관세 관행의 연장기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는 지속할 것을 주장한 반면 EU, 일본 및 개도국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현재 서비스교역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무관세의 영속화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무관세관행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5.2. 디지털 제품의 분류문제

디지털 제품이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아니면 새로운 혼합체인가에 대한 쟁점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만일 디지털 제품을 GATS의 적용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GATS가 회원국이 개방을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GATS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GATS의 개방 약속이 공급모드별로 구분되어 있어 전자전송이 어느 공급모드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제품을 서비스로 분류하고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는

6) WTO, S/C/13, 2000, 12, 6.

방안과 디지털 제품이 기존의 GATS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다 자유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게임,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입장보다는 EU측의 입장을 우호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3.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의 연장문제

디지털 제품의 분류문제에 대해 EU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비협상실무작업반'을 WTO 이사회 내에 설치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디지털 제품이 GATT에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GATS에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이 다만 일반이사회에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작업프로그램에 대해서도 EU는 인증, 계약,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콘텐츠 등의 무역관련 측면을 포함하자는 주장인 반면 미국은 이들 문제가 이미 GBDe⁷⁾, 유엔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OECD 및 WIPO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공통이슈를 다룰 특별작업반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7)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의 약자로 1999년 1월 뉴욕에서 발족한 모임으로 미국 정부와 OECD 등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제정해 나가는 데 대응하여 민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AOL, IBM, NEC, NTT, 노키아, 지멘스 등 6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한컴프린텔이 참여하고 있다.

VI. 결론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운영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의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지금까지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결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WTO 협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GATT 혹은 GATS협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유화가 결정된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통상문제가 되는 부문은 디지털콘텐츠로 과거와 같은 기록매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 혹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분류와 적용규범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와도 직결된다. 전자상거래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관세부가가 가능하지만 서비스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 이후 작업프로그램의 연장방법에 대해 비협상그룹을 운영하는 방법과 기존의 산하기구를 통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하자는 방안이 대립되고 있으나 비협상그룹의 운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의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

가그룹을 운영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1998년 12월 이후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와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추진된 작업프로그램에서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이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전자상거래의 논의가 앞으로 GA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부문이 전자적으로 수행될 경우의 문제점, 기술적으로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현실적으로 양허되지 않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규제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금지가 영화 및 음악 등의 전자전송물에 대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책 등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결국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들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쌍무협상 및 다자협상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상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효율적인 통상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세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보안 및 암호화기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통상협상에서는 이슈별로 통상이익을 같이하는 국가군과의 연대를 통하여 원칙협상의 구도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규범이 없이도 전자상거래는 경이적

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교역형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결국 WTO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제정에 대한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2000.
- 김수의 역,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김희철·이신규, 「국제무역의 이해」, 두남, 2000. 1.
- 남진우, “전자무역거래상의 전자식 운송서류활성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1호, 1999. 7.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현황과 인터넷무역」, 1999. 8.
- 심상렬, “인터넷 무역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7.
-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1996.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정책연구원, 1997.
- 이신규, “한국기업의 EDI도입에 관한 영향요인과 효과”, 「정보학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1999. 12.
- 윤창인,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KIEP정책연구자료 98-18, 1998.
- ,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준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 정순태, “전자상거래와 세계무역기구(WTO) : 무역정책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 『정보학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1999. 12.
-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심포지움, 1997.
-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32권, 제1호, 1997.
-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및 국가전략』, 1999. 6.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 1998.
- 한철수, 『서비스시장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 Kalalkota, Ravi and Andrew Whinston, *Electronic Commerce: A Manager's Guide*, Addison-Wesley, 1997.
- Kosiur, Darid,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N.Y. : Microsoft Press, 1997.
- OECD, *OECD Annual Report*, Paris: OECD, 1997.
- _____, a.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TD/TC(98)9, 1998
- _____, b.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DSTI/ICCP/IE(98)3/FINAL, 1998.
- _____, c. “Electronic Commerce: Trade Policy Aspects of Digitized Products Provided on the Internet.” TD/TC/WP/(98)30, 1998.
- _____, d. “Electronic Commerce: Outline of Proposed Approach to Follow up on Certain Trade Policy Aspects.” TD/TC/WP/(98)46, 1998.
- _____, 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 1998.
- _____, f.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5/Part1, 1998.
- Panagariya, Arvind, *E-Commerce, WTO and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Maryland, mimeo, 1999.
- WTO, a.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WTO, 1998.
- _____, b.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G/C/W/128, 1998.
- _____. S/L74 27 July, 1999.

Electronic Commerce Related Issues in the WTO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Shin-Kyu, Lee*

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 and help firms make the best of the opportunities of market access. The comprehensive programs had been implemented to provide better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UNCITRAL, APEC and etc. Especially, WTO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to implement efficient forms and rules on electronic commerce after Seattle 3rd Ministerial Conference. Member countries recognize the need to conduct the electronic commerc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rules of WTO.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o be solved such as the clarifications of concepts and definitions,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technological neutrality in GATS, the imposition of taxa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copyright as well as trademark.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forms and rule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will be influential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 member countries have to adapt them in their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further discussion will be continued in GATS, we ne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merce.

* Dept. of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Chungwoon University.